

2019년 지방계약법령집

I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별 찾아보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	제1조(목적) 6	제1조(목적) 6
제2조(적용 범위) 7	제2조(정의) 6	제2조(정의) 6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7		제3조(적용 범위)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8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 8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8	
제6조(계약의 원칙) 9	제5조(준용) 9	
제6조의2(청렴서약제) 10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10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11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11	
제8조(계약의 대행) 12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14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14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1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1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7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8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18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18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9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22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23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25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26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27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28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28
		제3장 계약의 방법	제3장 계약의 방법
제9조(계약의 방법) 29	제11조(입찰방법) 29 제12조(입찰의 성립) 29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29	제22조(경매) 29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30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31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 34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한 제한 금지) 35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35 제23조 삭제<2010.11.5.> 36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37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36 제15조(공사의 입찰) 37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40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42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42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 공고) 42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 43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43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45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47
	제18조(2단계 입찰) 43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45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45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 5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52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51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52 제28조 삭제<2016.9.13.> 53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55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5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한 수 있는 경우) 56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56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64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67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67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67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68	
	제28조(분할수의계약) 68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 69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69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71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72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72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72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72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72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10조(입찰공고) 74	제33조(입찰공고) 74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74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75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75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75	제38조(입찰 참가신청) 7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입찰보증금)	79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77	제40조(입찰방법)	76			
		제37조(입찰보증금)	79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79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80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80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80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82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83			
				제56조(주식양도증서)	84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84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84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85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85			
				제61조(보증금의 반환)	86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89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91			
제13조(낙찰자 결정)	96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91	제42조(입찰무효)	92			
				제42조의2 삭제<2016.9.13.>	94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94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95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95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96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9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2조의2 삭제 〈2016.1.15.〉 98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98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9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00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103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04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105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05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106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4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106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07	제49조(계약서의 작성) 107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108	제47조(계약서의 작성) 107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108
제15조(계약보증금) 109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109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112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112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113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114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09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112
제16조(감독) 115	제56조(감독) 115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116	제65조(감독 및 검사) 115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 115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115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검사)	120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117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118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118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119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120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120 제64조(검사) 120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122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122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123 제67조(대가의 지급) 123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125	
제18조(대가의 지급)	123		
제19조(대가의 선납)	126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126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26 제70조(하자 검사) 128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26 제69조(하자 검사) 128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129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129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130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131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131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129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30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131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134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34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39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2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4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9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2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4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체결) 143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143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145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145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146	
제25조(단가계약) 147	제79조(단가계약) 147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47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47	
제27조(개산계약) 148	제81조(개산계약) 148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 149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149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150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150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151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152	
제28조(종합계약 등) 152	제87조(종합계약) 152	
제29조(공동계약) 153	제88조(공동계약) 153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154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155	
제30조(지연배상금 등) 156	제90조(지연배상금) 156	제75조(지연배상금률) 156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157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157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157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59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59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159
		제76조의2(청문) 160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16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1조의2(과징금) 168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168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168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0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70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172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172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172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173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73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73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175	
	제92조의9(심의) 176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176	
	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177	
	제92조의12(수당) 178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 179	
	제93조 삭제<2014.2.5.> 179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79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181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182	
	제95조(정의) 182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184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185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187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186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188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187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190	제81조 삭제<2007.10.5.> 187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192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 195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197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의 심의) 200 제101조(설계비 보상) 200 제102조 삭제<2007.9.20.> 201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201 제104조 삭제<2007.9.20.> 203 제105조 삭제<2009.8.5.> 203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03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203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20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205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07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208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208 제111조(재심청구) 209 제112조 삭제<2016.11.29.> 210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210 제114조(소위원회) 211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212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이의신청) 208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210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210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1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2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7조(정의) 229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230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231 제130조 삭제<2011.9.15.> 231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231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34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235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236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238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 239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240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40 제138조(평가) 240 제10장 보칙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1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242 부 칙 242	
부 칙 242	부 칙 242	부 칙 2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정	2005. 8. 4	법률 제 7672호		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제정	2006. 1. 2	행정자치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 8173호		타법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	2007.10. 5	행정자치부령 제396호	
타법개정	2007. 5.11	법률 제 8423호		타법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타법개정	2007.12.13	행정자치부령 제407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타법개정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4호	타법개정	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 54호	
일부개정	2009. 2. 6	법률 제 9423호		일부개정	2007. 9.20	대통령령 제20283호	타법개정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09. 2. 6	법률 제 9423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일부개정	2009.12.30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타법개정	2009. 5.21	법률 제 9685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2009.12.30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	일부개정	2009. 3.16	행정안전부령 제 71호	
타법개정	2013. 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2008. 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일부개정	2009. 8. 7	행정안전부령 제 95호	
일부개정	2013. 5.22	법률 제11784호		타법개정	2008. 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일부개정	2010.11. 5	행정안전부령 제171호	
일부개정	2013. 8. 6	법률 제12000호		일부개정	2009. 1.13	대통령령 제21259호	일부개정	2010.11. 5	행정안전부령 제171호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4호	일부개정	2011.12.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	
타법개정	2016. 5.29	법률 제14197호		타법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52호	일부개정	2011. 3.16	행정안전부령 제198호	
일부개정	2016. 5.29	법률 제14194호		일부개정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2호	일부개정	2013.11.22	안전행정부령 제 29호	
타법개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일부개정	2013. 3.15	행정안전부령 제348호	
일부개정	2017.12.26	법률 제15296호		타법개정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타법개정	2013. 3.23	안전행정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18.12.24	법률 제16042호		타법개정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2호	일부개정	2014.10.16	안전행정부령 제 94호	
				타법개정	2009. 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2호	일부개정	2014. 2. 7	안전행정부령 제 57호	
				타법개정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일부개정	2015. 8.19	행정자치부령 제 32호	
				일부개정	2010. 7.26	대통령령 제22303호	일부개정	2016. 1.15	행정자치부령 제 60호	
				일부개정	2010. 7.26	대통령령 제22303호	일부개정	2016.11.29	행정자치부령 제 86호	
				일부개정	2010. 7.26	대통령령 제22303호	일부개정	2016. 9.13	행정자치부령 제 81호	
				타법개정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2017. 7.26	행정안전부령 제 1호	
				타법개정	2011. 1.26	대통령령 제22638호	일부개정	2017. 8. 9	행정안전부령 제 5호	
				타법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일부개정	2018. 7. 3	행정안전부령 제 65호	
				타법개정	2011.11. 1	대통령령 제23282호				
				타법개정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타법개정	2011.12. 2	대통령령 제23337호				
				타법개정	2011. 7.28	대통령령 제23051호				
				일부개정	2011. 9.15	대통령령 제23134호				
				일부개정	2011. 9.15	대통령령 제23134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타법개정 2012.10. 8 대통령령 제24130호 타법개정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5.23 대통령령 제23808호 일부개정 2012. 5.23 대통령령 제23808호 타법개정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6호 일부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0호 일부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0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일부개정 2014.11.24 대통령령 제25770호 타법개정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1호 타법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 일부개정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 타법개정 2014. 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일부개정 2015. 8.19 대통령령 제26491호 일부개정 2016. 1.15 대통령령 제26899호 타법개정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8호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2호 타법개정 2016. 2.11 대통령령 제26975호 타법개정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2016. 7.28 대통령령 제27401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1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1호 타법개정 2016. 9.29 대통령령 제27524호 타법개정 2017. 1.26 대통령령 제27807호 타법개정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5호 타법개정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6호 일부개정 2018. 7.24 대통령령 제29059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타법개정 2018. 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2018. 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6.]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당사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6.]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8.6.]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 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9.15.]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개정 2010.7.2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 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전문개정 2010.7.2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 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	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5.] [제목개정 2015.8.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5.]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 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 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1. 공사: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00분의 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11.5.]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2.5.>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 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 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 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 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5.]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전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전문개정 2010.11.5.]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8.5.]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09.8.7.]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2조(경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 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10.11.5.]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11.5.]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	제23조 삭제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② 삭제 <2016.9.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5.>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 작성할 수 있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 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 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 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 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 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수인(數人)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3. 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7.26., 2017.8.9.>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11.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전문개정 2010.11.5.]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 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삭제 <2017.1.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016.11.29.〉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 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정 2011.12.26.> [전문개정 2010.11.5.]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용역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전문개정 2010.11.5.] 제28조 삭제 <2016.9.13.>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	찰 참가자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 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 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견적서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9.15.> 라. 삭제 <2013.11.20.> 마. 삭제 <2013.11.20.> 바. 삭제 <2013.11.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전문개정 2010.7.26.]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19.> [전문개정 2010.11.5.]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 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 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 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 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 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5.]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	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5.]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1. 삭제 <2016.1.15.> 2. 삭제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6.11.29.>	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채신 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 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에금증서·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에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전문개정 2010.11.5.]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 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전문개정 2010.11.5.]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장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5.]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2017.7.26.>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전문개정 2010.11.5.] 제42조의2 삭제 <2016.9.13.>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	[전문개정 2010.7.26.]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2. 삭제 <2017.8.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의2 삭제 <2016.1.15.>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본조신설 2009.8.5.]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 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 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 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 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 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 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 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 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삭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2011.9.15.〉 ⑫ 삭제 〈2016.9.13.〉 ⑬ 삭제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삭제 <2017.8.9.>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2.5.]	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4.2.5.]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출발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5.]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26., 2016.9.13.> ③ 삭제 <2010.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既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014.11.19., 2017.7.26., 2018.7.24. > [전문개정 2010.7.26.]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계약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일 : 2019.2.4.] 제56조제1항제2호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0.7.26.]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되는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6.9.13.,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으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4.2.5.]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	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10.7.26.]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정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	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에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9.6.25.] 제22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 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 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계약금액}}$ 2. 등락폭 = $\text{계약단가} \times \text{등락률}$ 3. 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⑥ 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 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또는 $\text{지수조정률} \times \text{선금금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5조(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본조신설 2010.7.26.] 제79조(단가계약)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1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8.12.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9.6.25.] 제27조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전석(전石) 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전문개정 2010.7.26.]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종합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 방법 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6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09.2.6.]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8.6.]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2018.12.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다. <신설 2013.5.22.>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5.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9.6.25.] 제29조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8.1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2017.7.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10.7.26.]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8.6.]	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전문개정 2010.7.26.]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2.5.]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		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6.]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찰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2014.2.5., 2014.5.22., 2016.1.15., 2018.7.24., 2018.12.11.>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 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9.6.25.] 제31조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5.8.1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2015.8.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19.>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와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와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8.19.>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본조신설 2014.2.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6.]	말한다. <신설 2016.1.15.>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지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 2019.6.25.] 제31조의5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 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제9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93조 삭제 <2014.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9.6.25.] 제33조의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6.] 제95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 (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 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11.5.]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전문개정 2010.11.5.]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81조 삭제 <2007.10.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4.5.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 삭제 <2009.11.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 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8.5.]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 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 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9.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 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본조신설 2011.9.15.] [제목개정 2014.5.22.]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02조 삭제 <2007.9.20.>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1.22.>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 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전문개정 2010.7.26.] 제104조 삭제 <2007.9.20.> 제105조 삭제 <2009.8.5.>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다)에 위배된 사항과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111조(재심청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청구와	

법	시	행	규	칙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 2019.6.25.] 제34조의2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12조 삭제 〈2016.11.29.〉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②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9.6.25.] 제35조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	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9.6.25.] 제37조	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11.29.>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10.7.26.]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9조(조정외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조정) ①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약정에 따른다. ② 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 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 (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나. 입찰공고(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라.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상담·지원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8.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전문개정 2018.12.24.] [시행일 : 2019.6.25.] 제38조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 2019.6.25.] 제39조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8.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2.6.]		2017.7.2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4.2.5.]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4.11.28.> [전문개정 2010.7.26.]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의 방법(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지역 의무 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물량 또는 그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아.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5.] [종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2011.9.15.>]	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입찰자별 입찰 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 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 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전문개정 2010.11.5.]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 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 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 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5.]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2.6.] 제42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 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8.5.] [제125조의2에서 이동 <2011.9.15.>]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9.20., 2011.9.15.>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15.]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9.15.>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9.2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회서 제출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8.19.] [제목개정 2016.11.29.]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30조 삭제 <2011.9.15.>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2011.9.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1.9.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 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본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9.1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본조신설 2015.8.19.]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목개정 2014.5.22.]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 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38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장 보칙 〈신설 2014.8.6.〉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 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 조·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자 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5296호, 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그 제한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8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계약: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8.12.24.〉 [본조신설 2014.12.9.] 부칙 〈제28586호, 2018.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호, 201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법률 제16042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59호, 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5호, 2018.7.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삭제 <2018.7.3.>

[별표 2] <개정 2016.9.1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별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별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별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별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별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별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장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 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년 1년 6개월 3개월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비고

- 위 표에서 "부실별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별점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하자비용"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금액비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보수비용"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용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6.11.29.〉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별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별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별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별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별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별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0% 5% 4% 3% 2% 1%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용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용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용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용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용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용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용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0% 5% 4% 1.5% 10% 5% 4% 1.5%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5% 3% 1.5%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5% 4% 4% 3% 2% 2% 2%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3%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7.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3%
6.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3%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0.5%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0.5%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0.5%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0.5%
7.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0.5%
8.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1.5%
9.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5%
10.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4%

비고

-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6.11.29.〉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30%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12%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9%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6%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3%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30%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5%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12%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4.5%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30%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12%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4.5%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5%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9%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5%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12%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12%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9%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6%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6%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5%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9%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9%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2.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9%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9%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5%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5%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5%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30%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5%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	15%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9%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5%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9%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4.5%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5%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4.5%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4.5%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4.5%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5%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9%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2%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5%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5%

비고

-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하자비용”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금액비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보수비용”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	등록관서		등록일	. . .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등록 종목 (세부 품목)			
위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귀 발주기관(발주자)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인)				
귀하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자치단체의 장 (인)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주의사항 1. 이 증서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기재사항 중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5.>

일반 (제한) 지명 입찰 참가통지서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찰건명				
	현장설명	일시:	장소:		
	입찰	일시:	장소: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서류제출처	(전화번호:)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OO관서 자치단체의 장 또는 성명 (인) 계약담당자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률: % • 보증금: 금 원정(W) •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증				처리기간
				즉시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관서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인)
귀하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입찰서				
입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건명			
	금액	금	원정(W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입찰자 (인)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입찰서	입찰 번호			입찰금액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억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1. 공고번호: 제	호			0	0	0	0	0	0	0	0	0	0	0	0
2. 입찰건명:				0	0	0	0	0	0	0	0	0	0	0	0
3. 준공(납품)연월일:				0	0	0	0	0	0	0	0	0	0	0	0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오른쪽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상호 또는 법인명:				〈작성 시 유의사항〉											
전화번호:				1.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합니다.											
주소: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대표자: (인)				- 바르게 표기한 것: ●											
주민(법인)등록번호				- 틀리게 표기한 것: ㉞ ㉟ ㉠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 참가신청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합니다.											
				4. 매 금액단위란은 1칸만 표기합니다(빈칸으로 두거나 2칸 이상 표기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5.〉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W)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W)
	계약보증금	금	원정(W)
	현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1.5.〉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W)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W)												
	계약보증금	금	원정(W)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납품일														
	납품장소														
	그 밖의 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h>단가</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257mm × 297mm(신문용지 54g/㎡)

(앞쪽)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W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W	)
	계약보증금	금	원정(W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기간	. . . ~ . . .		
	위치			
	그 밖의 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 용역 입찰유 의서 1부 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계약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W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W	)
보증금 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W)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W)		
보증금 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1.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W)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원정	()%금	원정	. . .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보증금 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인)
기관명: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발신일: 수신: 참조: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 재 내 용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등	
	제재근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자치단체의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7.8.9.〉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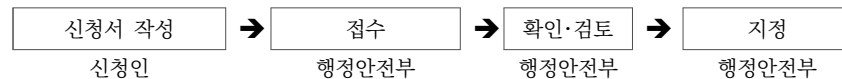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상담·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지방계약법령집 제 I 권

법·시행령·시행규칙

인 쇄 일 2019년 4월
발 행 일 2019년 4월
발 행 인 김 동 현
발 행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 소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5층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Tel. 02-3274-2352 Fax. 02-3274-2303
홈 페이지 <http://www.lofa.or.kr>
편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